

제 48 차 개정
2024. 3. 28

定 款

TAEYOUNG

태영건설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주 식

제 3 장 사 체

제 4 장 주주총회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감사위원회

제 6 장 계 산

제 7 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태영건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AEYOUNG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목건축공사업
2. 포장공사업
3.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 3-1 전기공사업 1종
 - 3-2 정보통신공사업 일반 1등급
4. 주택 및 건물건설업 및 매매, 임대, 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5. 군납업 및 주한외국군 군납업
6. 전문소방시설공사업
7.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업(분뇨처리, 오수정화,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 7-1 공동, 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및 분뇨관련영업(수집운반, 처리, 청소업)
 - 7-2 광역, 일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재활용 포함)
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업
9.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업(대기·폐수 및 수질,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10. 택지조성업 및 산업단지조성업
1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2. 조림 및 원예업(화훼, 수목의 재배 및 판매업)
13.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분양, 회원모집 및 관리·임대업
14.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의 설치이용, 회원모집 및 관리운영업
15. 온천관광개발사업, 위생접객업(목욕장, 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 특수목욕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업
16. 자연휴양림, 관광농원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업
17. 도시가스시공업
18. 일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 및 일반특정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임산, 과수, 축산업 및 조경공사업
21. 석산개발, 골재생산 및 판매업
22. 기계제조 및 판매업
23. 도·소매업
24. 건설자재 및 콘크리트제품,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토건재료제조 및 판매업
25. 주차장관리운영업
26. 종합중기대여업
27. 플랜트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28. 토목, 건축,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
29. 전문기술용역업
30. 종합건설기술용역업
31. 준설업
32. 실내장식업 및 조명장치업
33. 화물취급업, 운수·창고업 및 자동차운송간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34. 공유수면매립사업
35. 일반측지측량업
36. 오염물질측정대행업
37. 환경영향평가대행업
38. 유료도로사업
39. 성인 및 노인복지사업건설 및 운영업
40. 정보처리, 교육 등 각종 용역업
41.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42. 해외종합건설 및 특수공사업
4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44. 산업설비용역업(종합환경, 산업공장, 원자력산업)
45. 특정열사용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
46. 발전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풍력, 태양광, 조력, 소수력 발전 등)
47.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48. 철도, 고속전철 및 경전철의 건설운영과 역세권 개발사업
49.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업
50. 시설물의 유지 관리업
51. 토양오염정화업
52. 수도시설 운영·관리업
53. 국내·외 부동산 투자·개발·운영업

54. 다음 각 업종에 해당되는 전문건설업 일체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55. 관광단지 조성업

56. 유독물, 대기, 수질 환경관리 대행업

57.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광명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십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팔백팔십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2 (전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3 (상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점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④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제8조의 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⑦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3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사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

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기준)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 회사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제 29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 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2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재무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0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담역 및 고문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0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41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 3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부 칙

제 45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제 46 조 (세칙내규)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47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48 조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 +1%추가 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며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정 관 변 경 연 혁

| | | | | | |
|------|----|--------------|------|----|--------------|
| 제 | 정 | 1973. 11. 21 | 제27차 | 개정 | 1998. 3. 20 |
| 제 1차 | 개정 | 1973. 12. 31 | 제28차 | 개정 | 1999. 3. 19 |
| 제 2차 | 개정 | 1974. 2. 24 | 제29차 | 개정 | 2000. 3. 17 |
| 제 3차 | 개정 | 1974. 6. 7 | 제30차 | 개정 | 2001. 3. 16 |
| 제 4차 | 개정 | 1975. 12. 23 | 제31차 | 개정 | 2001. 10. 31 |
| 제 5차 | 개정 | 1976. 9. 29 | 제32차 | 개정 | 2002. 3. 15 |
| 제 6차 | 개정 | 1976. 10. 11 | 제33차 | 개정 | 2003. 3. 14 |
| 제 7차 | 개정 | 1976. 10. 17 | 제34차 | 개정 | 2004. 3. 19 |
| 제 8차 | 개정 | 1978. 1. 11 | 제35차 | 개정 | 2006. 3. 17 |
| 제 9차 | 개정 | 1978. 9. 18 | 제36차 | 개정 | 2007. 3. 23 |
| 제10차 | 개정 | 1979. 1. 29 | 제37차 | 개정 | 2008. 3. 21 |
| 제11차 | 개정 | 1979. 3. 19 | 제38차 | 개정 | 2009. 3. 20 |
| 제12차 | 개정 | 1979. 12. 28 | 제39차 | 개정 | 2010. 3. 19 |
| 제13차 | 개정 | 1980. 1. 5 | 제40차 | 개정 | 2012. 3. 23 |
| 제14차 | 개정 | 1981. 12. 31 | 제41차 | 개정 | 2014. 3. 21 |
| 제15차 | 개정 | 1985. 8. 21 | 제42차 | 개정 | 2015. 3. 27 |
| 제16차 | 개정 | 1987. 2. 25 | 제43차 | 개정 | 2017. 3. 24 |
| 제17차 | 개정 | 1989. 6. 1 | 제44차 | 개정 | 2019. 3. 22 |
| 제18차 | 개정 | 1990. 3. 16 | 제45차 | 개정 | 2020. 3. 20 |
| 제19차 | 개정 | 1991. 3. 15 | 제46차 | 개정 | 2021. 3. 19 |
| 제20차 | 개정 | 1992. 3. 12 | 제47차 | 개정 | 2022. 3. 18 |
| 제21차 | 개정 | 1992. 8. 21 | 제48차 | 개정 | 2024. 3. 28 |
| 제22차 | 개정 | 1993. 3. 12 | | | |
| 제23차 | 개정 | 1994. 3. 18 | | | |
| 제24차 | 개정 | 1995. 3. 17 | | | |
| 제25차 | 개정 | 1996. 3. 15 | | | |
| 제26차 | 개정 | 1997. 3. 14 | | | |